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국가기술표준원 고시·공고 (2021. 04. 05.)

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정(안)을 행정예고 하였다.

❖ 주요 개정내용

①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(제4조)

② 인증 및 확인증 번호부여 체계 정비(별표 2)

- 해외 제조공장 증가 등으로 인해 공장 일련번호에 4자리 이상의 번호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정

* (기존) 일련번호 3자리 숫자 → (개정) 일련번호 숫자

현행	개정안
제4조(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) ① ---. ② ---.	제4조(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) ① ---.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, 비대면으로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비대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우편, 전자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. ② ---. 또한, 안전인증기관은 비대면 공장심사를 실시한 경우, 제조자로부터 심사일자 기준으로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제공받아, 그 제품을 채취한 시료로 갈음할 수 있다.
(별표2)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2.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식별방법 가-라 생략 마. ⑤란에는 동일지역·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를 3자리 숫자로 기재한다.	(별표2)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2.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식별방법 가-라 현행과 같음 마. ⑤란에는 동일지역·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 일련번호를 숫자로 기재한다.